

## 1) 향임직 진출

향촌사회에서 권력기구로 행세하였던 향촌기구로는 향청(鄉廳), 향교(鄉校), 서원(書院)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들은 모두 구향들의 전유물이었다. 구향들은 이들 기구를 통하여 각 고을에서 유지 행세를 하였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향촌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신향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구향이 장악한 향촌기구에 참여를 기도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는 점차 변모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신향세력들은 향청의 임원에 진출되기 시작하였다. 향청의 직원을 향임(鄉任)이라고 부르는데, 향임으로는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몇 명의 도감(都監)과 감관(監官)이 있었다. 향임은 원래 그 고을의 전통 명문양반에서 선출되는 것이 상례였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러한 향청조직에도 신향세력들이 점차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뜻있는 선비나 사족들은 향임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급기야는 더욱 많은 신향세력들이 향임을 맡는 지경에 이르렀다. 순천에 이웃한 장흥의 재야지식인 위백규(魏伯珪 : 1727~1798)는 신향들의 향임차지현상과 이에 따른 양반사족들의 향임기피현상을, 그의 개혁론을 집약한 『정현신보(政鉉新譜)』에서,

사대부가 향임을 천시해서 향임들과 같은 줄에 서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따라서 향임이 되는 자는 오직 가문이 미천하거나 국역을 피하려는 자, 교활하여 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자, 빈궁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 위백규의 주장을 믿는다면 이미 18세기 후반경 향촌사회에서는 구향과 신향들이 향임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신향세력들이 향임을 많이 맡고 있었기에 야기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신향들이 향청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신향세력들의 자체적인 힘의 축적과 양란을 거치면서 야기된 향촌사회 운영방법 변화와 일정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즉, 왜란과 호란으로 향촌운영의 주도세력인 구향들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나, 1654년(효종 5) 제정된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로 향청에 군사업무가 맡겨지고, 군무에 잘못이 있으면 향임을 처벌함으로써 구향이 향임을 회피하게 된 것도 한 이유였다. 구향의 향청회피는 결국 신향의 향청장악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향들이 향임을 차지하는 방법은 대개 매임(賣任)이었다. 매임은 수령이나 향청 관련자가 돈을 받고 향임직을 파는 것이다. 순조 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를 보면 강진에서는 향임되기를 도모하는 자가 길에 줄을 잇고 있었다고 하고, 수령은 불과 다섯 달 동안에 향임을 13번이나 교체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고종 때 전라도 암행어사의 보고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향리를 향청의 좌수로 임명하는 데 뇌물을 1,000냥이나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매임은 지방재정의 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대부분은 수령이나 향청관리자들의 자금 착복을 위한 방법으로 자행되었다. 흔히 새로 향임에 임명된 자에게 받는 일종의 기부금 형식으로, 예전(禮錢)이라는 것을 상례적으로 거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탈이었으나, 수탈당하는 자들이 원하여 원납하고, 이에 따른 특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백성들에 대한 수탈과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